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3 선고 2020가합5907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

담당변호사 조성규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1. 5. 13.

판 결 선 고 2021. 6. 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D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140,360주에 관하여 2019. 10. 24.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9. 3. 29.경 C에게 20억 원을 대출하였다.

나. 2019. 10. 15. 무렵,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8억 원을 초과하였다.

다. C는 2019. 10. 24. 피고와 사이에, D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140,360주(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에 관한 양도계약(이하 '이 사건 양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하였다.

라.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주식 이외 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고,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나아가 C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재산상태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지숙 판사 정교형 판사 공우진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1민사부 [보존]

결정

사건 2021카경31289 판결경정

신청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

담당변호사 김재승, 조성규

피신청인 주식회사 B

주문

위 당사자들 간의 이 법원 2020가합59073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21. 6. 3.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“D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140,360주”를 “D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140,360주(1주당 액면가 500원)[2019. 11. 20. 액면분할 후 보통주 701,800주(1주당 액면가 100원)]”로 경정한다.

이유
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1. 9. 3.

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권혁준 판사 박미선